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6 -11
----------	----------

발의연월일 : 2006년 3월 10일

발 의 자 : 신현기 의원 외 8인

제안이유

-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인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세대·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3조)
-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장애인세대 등으로 함(안 제5조)
-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군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장애인세대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 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 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저소득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